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91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18.

발 의 자 : 박용갑 · 장철민 · 조승래
황정아 · 장종태 · 문진석
소병훈 · 이병진 · 서삼석
추미애 · 김영환 · 윤준병
어기구 · 박상혁 · 박홍배
황명선 · 안태준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지역축제, 문화행사,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행사가 도시 중심가 또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서 빈번히 개최됨에 따라, 교통약자인 노인, 장애인, 임산부, 어린이 등의 이동이 현저히 제한되고, 병원·약국·응급시설·복지시설 등 필수 시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거나 필수 시설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,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.

이에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, 병원·약국·응급시설 등의 필수 시설 접근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

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며, 특별교통수단의 운영, 임시 교통수단 배치, 비상통행로 확보, 임시 주차구역 설치 등의 세부 방안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,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함(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).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5(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국가등”이라 한다)는 도로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(이하 “대규모 행사”라 한다)를 개최하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등은 대규모 행사 기간 동안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

1. 특별교통수단의 증차 및 운행 확대
2. 대규모 행사 지역 내 저상버스 운행 및 교통약자 우선 승차 시스템 운영
3.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를 위한 조치
4. 병원, 복지시설, 장애인 시설 등 필수 시설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임시 교통수단 배치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지원 대책을 행사 개시 15일 전

까지 공표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 및 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6조의6(대규모 행사 시 필수시설 접근 보장) ① 국가등은 대규모 행사로 인하여 교통약자의 병원·약국·응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 “필수시설”이라 한다)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등은 대규모 행사 기간 중 교통약자의 필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

1. 필수시설과 주요 도로를 연결하는 비상통행로 확보

2. 필수시설 이용객을 위한 임시 주차구역 또는 하차 지점 지정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 접근 보장을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시설과 협력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방안 및 제3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이 법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6조의5(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국가등”이라 한다)는 도로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(이하 “대규모 행사”라 한다)를 개최하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 <u>② 국가등은 대규모 행사 기간 동안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</u> <u>1. 특별교통수단의 증차 및 운행 확대</u> <u>2. 대규모 행사 지역 내 저상버스 운행 및 교통약자 우선승차 시스템 운영</u> <u>3.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를 위한 조치</u> <u>4. 병원, 복지시설, 장애인 시설 등 필수 시설과 행사장을 연</u>

<신 설>

결하는 임시 교통수단 배치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지원 대책을 행사 개시 15일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 및 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6조의6(대규모 행사 시 필수 시설 접근 보장) ① 국가등은 대규모 행사로 인하여 교통약자의 병원·약국·응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 “필수시설”이라 한다)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등은 대규모 행사 기간 중 교통약자의 필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

1. 필수시설과 주요 도로를 연결하는 비상통행로 확보

2. 필수시설 이용객을 위한 임시 주차구역 또는 하차 지정 지정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 접근 보장을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시설과 협력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방안 및 제3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